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7020호 2026년 4월 2일(목)

경 상 북 도

■ 규 칙

-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3112호)5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고 시

- 지방하천 송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22호) 18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23호) 22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24호) 24

■ 공 고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657호) 27
- 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658호) 28
- 2026년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662호) 39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663호) 45
- 기본측량 실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664호) 46

시 군

■ 고 시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6-42호) 48

■ 공 고

-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6-786호) 56
-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자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경산시 공고 제2026-727호) 62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규칙 제3112호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일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황 명 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 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 제4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제8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징계(부가금)의결,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의 취소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등의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122호

지방하천 송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송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변경) 목적

영양군에서 추진 중인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부 구간(No.0+000~No.0+771)의 계획 하폭, 개수 계획을 변경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변경)

하천 명칭	주요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송하천	0+000	종점	260	260	260	260	185.20	186.25	58	58	
	1+300	광곡천(소) 합류후	260	260	260	260	193.31	193.31	30	30	
	1+300	광곡천(소) 합류전	205	205	205	205	193.31	193.31	30	30	
	2+241	옥계1낙차공 지점	205	205	205	205	199.37	199.37	32	32	
	3+925	버그덤천(소) 합류후	200	200	200	200	212.61	212.61	24	24	
	3+925	버그덤천(소) 합류전	190	190	190	190	212.61	212.61	24	24	
	4+800	소지곡천(소) 합류후	175	175	175	175	220.94	220.94	20	20	
	4+800	소지곡천(소) 합류전	165	165	165	165	220.94	220.94	20	20	
	5+500	삼막천(소) 합류후	155	155	155	155	227.28	227.28	20	20	
	5+500	삼막천(소) 합류전	120	120	120	120	227.28	227.28	20	20	
	5+700	오도곡천(소) 합류후	120	120	120	120	228.94	228.94	18	18	
	5+700	오도곡천(소) 합류전	85	85	85	85	228.94	228.94	18	18	
7+184	시점	60	60	60	60	255.58	255.58	10	10		

* 변경구간: No.0+000~No.0+771 (계획 하폭, 제방 정비계획 변경)

** 변경내용

- 합류하천 화매천 기점 홍수위 반영(증 1.05m)
- 옥계보축1지구→원리1지구(축제), 옥계보축2지구→원리2지구(축제) 계획 변경
- No.0+351 원리1배수암거 신설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영양군(건설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영양군 건설안전과(☎054-680-6730)

2.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변경)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m ²)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송하천	지방 하천	경북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461-1번지선	경북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화매천(지방) 합류점	7.18	271,009	272,244 (증 1,235)	·결 정 일: 고시일 ·결정사유: 하천기본 계획(일부변경)

※ 변경 내용: No.0+100~No.0+600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393번지 외 21필지
하천구역 신규 지정

나.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등(변경)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영양군(건설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열람장소 비치)
-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영양군 건설안전과(☎054-680-6730)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6-1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제5단지) A10BL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대광에이엠씨(대표 김진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 10층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제5단지) A10BL

4. 사업개요/변경내용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공동주택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41,554.30㎡ ○ 건축면적 : 21,786.9801㎡ ○ 연 면 적 : 415,538.9036㎡ ○ 총세대수 : 2,740세대 ○ 지하4층/지상26층, 31개동
주요 변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계단#2, 주출입구 램프 위치 이동 및 파일기초 변경 ○ 어린이집-1 파일기초 변경 ○ 외부계단#5, #6 계단실, 단위세대 최하층바닥(간접→직접) 단열재 변경 ○ 램프#2, #3, 주민공동시설 비상차량 램프 일부 슬래브 변경(크랙발생 우려) ○ 지하주차장 내외부 램프 상방향 구간 슬래브 하부 무근콘크리트 적용 ○ 엘리베이터 스위치 위치 이동(점형블록 포함) 및 출입구 오픈 규격 변동 ○ 엘리베이터 기계실 높이 조정 및 바닥 변경(엘리베이터 속도에 맞춤) ○ 단위세대 옥실 벽체 방수 한계 조정(액체방수→액체+도막방수) ○ 단위세대 주방발코니 터닝도어 문짝 재질 변경(로이복층유리→단열차음판넬) ○ 벽체 전이 없는 구간 일반보 적용 및 일부 전이보 배관 간섭으로 보춤 조정 ○ 일부 토압벽 적용 구간 추가 및 토압벽 두께 변경 ○ 옥탑 파라펫 높이 변경(300mm→400mm, 배근 상세도 추가) ○ 전체적 일람, 형별성능내역과 건축평면, 구조평면 상이한 부분 오기 수정 등

5. 사업기간 : 2022. 07. ~ 2027. 6.

6. 시 공 자 : (주)대광건설(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

7.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가.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경상북도 고시 제2026-12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덕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강구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유지·보수 사업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내 수역

4. 사업의 목적

- 강구항의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준설공사 시행

5. 사업의 명칭 : 연안항(강구항) 준설공사

6. 사업의 개요

- 유지준설 $A=4,761\text{m}^2$ ($V=7,952\text{m}^3$)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8. 총사업비 : 197백만원(부가세 포함)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65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업 체 명 : (주)에스비씨글로벌
2. 대 표 자 : 최원기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680
4. 전화번호 : 053-356-3008
5. 등록번호 : 제32호
6. 등록일자 : 2026.03.30.

경상북도 공고 제2026-658호

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발 공고

도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생활 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개요

◇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개요

▶ 관련규정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 선발인원 : 고등학생 00여명 및 대학생 00여명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고등학생 : 연 70만원(생활비)
- 대 학 생 :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
 - 등록금 : 타 장학금 제외 실 납부액 지원 (한도 150만원)
 - 생활비 : 등록금 전액 장학생도 지원 가능
- ▶ 선발방법 : 학자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 ▶ 지급시기 : 6월말, 9월말 2회 분할 지급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및 분할 지급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요건

-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직장(경상북도 내에 위치해야 함)에서 12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 이하인 자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①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기준(통계청 고시)

(단위 : 원)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금액	5,279,643	7,351,586	7,921,982	8,394,286

- ② 가구원수는 미성년자 자녀(학업상의 이유로 독립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를 포함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공간에 거주하는 인원을 말하며, 소득 합산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근로자 본인과 성인 가구원(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에 한함.
- ③ 성인 가구원(1963. 1. 1. 이후부터 2007. 12. 31.이전 출생자까지)은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성인자녀의 경우 대학(원) 재학 증명서, 병역이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시 소득없음으로 간주함.
(미제출시 가구원수에서 제외)

◇ 신청제외자

- ▶ 도내 근로자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기 수혜자(최근 3년 연속)

◇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 ▶ 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단, 관공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동 기관의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제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

▶ 선정방법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 등록금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등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생활비는 다른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우선순위 기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정

- ①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 근로자·사용자
(단, 1회에 한함)
- ② 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

▶ 예산 범위 내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아래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이 적은 근로자
- 2순위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

※ 직전 연도 학자금 신청 근로자 중에 고의로 제출서류를 누락시키고,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 장학금 수혜 여부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자금 선정에서 배제 및 후순위에 배정할 방침임

※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 전액 반납만 허용

(일부 반납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자 발표

-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자에 한하여 문자 발송, 선정자 명단 게시 (한국노총 경북본부 홈페이지)

3. 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신청

1. 학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서식 2)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서식 3)
4. 소득 증빙서류(신청 근로자와 등본상 성인 가구원은 필히 제출)

4-1. 신청 근로자의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체 1부(인적공제 포함)

※ 배우자나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단, 그 외의 경우(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가구원)에는 필히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이

- 소득 있는 근로자일 경우 :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 2024년 소득금액증명서류 1부

-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서류 1부
(단, 성인자녀가 군인일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1부,
성인자녀가 대학(원)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1부 제출 시 소득없음으로 간주함)
- ※ 신고 의무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연금소득, 임대소득, 비과세소득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⑧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1항
 -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근로자와 신청학생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 제출)
 - 재학증명서(학생) 1부
 - 재직증명서(근로자) 1부
 - 등록금 납부 영수증(대학생에 한함, 당해년도) 사본 1부
 - 통장사본(학생 또는 부모계좌) 1부
-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기망으로 학자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환수조치하고, 동법 제35조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 학자금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2학기 추가서류 제출(9월 중 안내)
 - 재학증명서(학생) 1부
 - 등록금 납부 영수증(대학생에 한함) 사본 1부
-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 접 수 처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 (접 수 처)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재로 397 전화번호) 053-952-1236
 - 도내 시·군 기업·노동업무 담당부서(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송부 또는 접수처 방문 제출

※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270-2184	의성군	경제투자과	830-6617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760-2581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870-6232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9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안동시	투자유치과	840-5015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341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04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370-2232
영주시	기업지원실	639-6112	고령군	투자유치과	950-6572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235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433
상주시	투자경제과	537-7412	칠곡군	투자유치과	979-6533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167	예천군	지역경제과	650-6231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 810-5157	봉화군	총무과	679-6592
			울진군	경제교통과	789-6773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790-6273

5. 기타사항

◇ 신청서식 등

-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gb.inochong.org/>)
공지사항란에 공고문 게시(신청서식 포함)
-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s://www.gb.go.kr/>) 알림마당 및 고시/공고란에
공고문 게시(신청서식 포함)
- ▶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문 게시(신청서식 포함)

◇ 기타 문의사항

- ▶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053-952-1236)에 문의
- ▶ 각종 소득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세무서, 행정
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등
- ▶ 군인증명서류 중 병적증명서는 ‘정부24’사이트에서, 입영사실확인서는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
- ▶ 가구원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와 신청학생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근로자의 등본상에 기재된 65세 이상 가구원은 별도의 소득증빙자료 없이
가구원으로 인정함
-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로 갈음

[서식 1]

학 자 금 지 급 신 청 서

* 학 생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 연락처			
소 속 학 교	고등학교	학년	반		
	대학(교)	학과	학년		
* 근 로 자 인 적 사 항					
학생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입사일자	업체 소재지
주 소	근로자연락처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p>* 가족 사항 (등본상 가구원 위주로 작성, 성인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혹은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제출시, 가구원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예외적으로 인정</p>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명	
배우자					
자					
자					
자					
<p>「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근로자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p>※ 첨부서류</p> <p>① 근로자 및 소득있는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이 사업소득 있을 시 소득금액증명 1부)</p> <p>② 성인 가구원(배우자 등)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1부</p> <p>③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근로자와 신청학생이 떨어져 살 경우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p> <p>④ 재학증명서(학생) 1부</p> <p>⑤ 재직증명서(근로자) 1부</p> <p>⑥ 등록금 납부 영수증(대학생에 한함, 당해년도) 사본 1부</p> <p>⑦ 통장사본(학생 또는 부모계좌) 1부</p> <p>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p> <p>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p> <p>※ 신청 근로자 연락처로 선정자 안내가 되오니 연락처는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서식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자로서 아래 사유로 인해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을 비롯한 타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 받은 학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학자금 반환 요구 시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학자금을 지원받음으로서 국가 장학금 등 타 장학금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해당 연도 국가 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 받은 학자금 및 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2. 본인은 학교에서 제적·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학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학자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명 : (서명)

경상북도 공고 제2026-662호

2026년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공고

「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제1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공고 제2026-236호)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4. 1.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사업규모 : 402백만원(도비) ※ 시군별 지원금 별도

○ 사업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으로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설치

3. 지원대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경상북도 소재 주택

② 태양광 설비설치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참여기업이 시공하고, 상기 ①번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nr.energy.or.kr/home>)

진행내용	기 간	
	1차(선착순)	2차(선착순)
신청자 - 참여기업 계약체결(신청대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3.18(수)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	4.14(화)	4.15(수)
제출완료 시 진행상태	접수완료	접수완료
에너지원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태양광(단독주1)·공동)
서류 보완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주1) 태양광 배분물량은 업체당 8건 배정, 2차(태양광 선착순)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건만 인정하며, 사업취소/포기 발생 시 해당 물량 보전 불가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기준 참고

5.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

○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에너지원	구분		설비가격 (육지) (VAT포함)	설비가격 (도서) (VAT포함)	지원단가 (육지)		지원단가 (도서)		
					국비 (VAT제외)	지방비 (VAT포함)	국비 (VAT제외)	지방비 (VAT포함)	
태양광	주택	3.0kW 이하	저탄소모듈	1,513	1,740	550	464	632	533
태양열	주택	14.0㎡ 이하	10.0MJ /m2·day초과	1,420	1,633	710	355	816	408
			7.5MJ /m2·day초과~ 10.0MJ /m2·day이하	1,420	1,633	646	355	742	408
	주택	14.0㎡ 초과 ~20㎡ 이하	10.0MJ /m2·day초과	1,225	1,409	613	306	704	352
			7.5MJ/ m2·day초과~ 10.0MJ/ m2·day이하	1,225	1,409	557	306	640	352
주택	자연순환식온수기 (6.0㎡급/대)	7,860	9,038	3,930	2,135	4,519	2,456		
지열	수직 말뚝형	17.5kW이하		1,620	1,863	737	518	846	596

※ 지방비 분담 비율 道 예산 편성 기준 3 : 7

6.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시군 담당부서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서 접수·사업선정·승인(1차 배분건) 및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일괄 지급하므로, 해당 시군 에너지담당 부서로 문의

7. 기타사항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시군별 세부시행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6호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관련 문의처

- 국비 보조금 관련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773
- 지방보조금 관련 문의처
 - 세부 지방비 지원 및 재량사항 관련 : 해당 시군 담당부서(붙임 참고)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054-880-7645)

붙임 : 담당부서 연락처 1부.

붙임	담당부서 연락처
-----------	-----------------

※ 세부 지방비 지원은 소재지 시군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	054-880-7645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	054-270-3395	
경주시	신성장산업과	054-760-2761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054-420-6286	
안동시	지역경제과	054-840-5305	
구미시	전략산업과	054-480-6197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32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463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054-537-7388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245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9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458	
영양군	영양양수발전건설추진단	054-680-6153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7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6275	
고령군	지역경제실	054-950-6582	
성주군	경제교통과	054-930-6705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8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238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35	
울진군	원전에너지과	054-789-646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35	

경상북도 공고 제2026-663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 번호	소재 지	등록일
주식회사 디엔디코퍼레이션 (김희라)	일반측량 (547-81-03179)	04-005927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08번길 23(휴천동)	2026.03.31.

경상북도 공고 제2026-664호

기본측량 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및 갱신 용역』 사업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

경 상 북 도 지 사

- 아 래 -

1.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 정밀도로지도 제작·갱신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6. 3. ~ 2026. 12.
4. 측량의 실시지역 : 경상북도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사업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031-210-2678)로 문의 바람.



시 군

고 시

김천시 고시 제2026-42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김천시 문당동 213-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2.

김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천시 문당동 213-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어울림한마당(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체육시설 : A= 34,219㎡(어울림한마당(제2스포츠타운)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천시청(스포츠산업과)
- 주 소 : 김천시 운동장길 1, 실내수영장 2층 (삼락동)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까지**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조서와 같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스포츠산업과(☎054-42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등 조서

[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주소	
1	김천시 문당동	190-15 (190-5)	답	2,526	552	김천시					
2	김천시 문당동	190-16 (190-6)	답	1,798	1,711	김천시					
3	김천시 문당동	190-17 (190-7)	답	1,266	1,178	김천시					
4	김천시 문당동	190-18 (190-8)	답	1,967	1,824	김천시					
5	김천시 문당동	190-19 (190-9)	답	1,223	1,162	김천시					
6	김천시 문당동	190-20 (190-10)	도로	288	254	(국)농림 축산식품부					
7	김천시 문당동	190-21 (190-11)	구거	460	117	(국)농림 축산식품부					
8	김천시 문당동	231-14 (213-1)	답	3,024	2,931	김천시					
9	김천시 문당동	213-15 (213-2)	도로	225	214	(국)농림 축산식품부					
10	김천시 문당동	213-16 (213-3)	답	2,208	2,070	김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주수	
11	김천시 문당동	213-17 (213-4)	답	850	820	김천시					
12	김천시 문당동	213-5	창고 용지	333	329	김천시					
13	김천시 문당동	213-6	구거	119	119	(국)농림 축산식품부					
14	김천시 문당동	213-7	전	374	374	김천시					
15	김천시 문당동	213-8	창고 용지	10	10	유*득	김천시 갯샘길 **(교동)				
16	김천시 문당동	213-9	창고 용지	20	20	유*득	김천시 갯샘길 **(교동)				
17	김천시 문당동	213-18 (213-10)	구거	334	56	(국)농림 축산식품부					
18	김천시 문당동	213-20 (213-11)	답	579	559	김천시					
19	김천시 문당동	213-21 (213-12)	답	2,593	2,519	김천시					
20	김천시 문당동	213-13	답	989	989	김천시					
21	김천시 문당동	214	답	119	119	김천시					
22	김천시 문당동	215-21 (215-1)	답	1,355	818	김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3	김천시 문당동	215-22 (215-10)	도로	132	80	(국)농림 축산식품부					
24	김천시 문당동	215-23 (215-11)	구거	188	25	(국)농림 축산식품부					
25	김천시 문당동	215-24 (215-13)	답	718	496	김천시					
26	김천시 문당동	216	답	102	102	김천시					
27	김천시 문당동	217-5 (217-1)	답	710	244	김천시					
28	김천시 문당동	217-6 (217-2)	도로	71	34	김천시					
29	김천시 문당동	256-11 (256-5)	도로	106	73	(국)농림 축산식품부					
30	김천시 문당동	256-12 (256-9)	구거	990	34	(국)농림 축산식품부					
31	김천시 삼락동	213	답	3	3	김천시					
32	김천시 삼락동	215	답	7	7	배*윤	구미시 인동**길 * , ** 동 ****호 (구평동,부영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면적 (m ²)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33	김천시 삼락동	216-1 (216)	답	2,664	2,462	김천시					
34	김천시 삼락동	221-3 (221)	답	2,642	2,520	김천시					
35	김천시 삼락동	221-2	도로	67	35	김천시					
36	김천시 삼락동	222	창고 용지	955	955	유*득	김천시 갯샘길 **(교동)				
37	김천시 삼락동	222-1	도로	100	2	김천시					
38	김천시 삼락동	222-2	답	1,358	1,358	유*득	김천시 갯샘길 **(교동)				
39	김천시 삼락동	223	진	2,449	2,449	김천시					
40	김천시 삼락동	223-1	도로	199	11	김천시					
41	김천시 삼락동	224	답	165	165	김천시					
42	김천시 삼락동	225-1	답	453	453	김천시					
43	김천시 삼락동	225-2	답	1,493	1,493	김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주소	
44	김천시 삼락동	225-3	답	1,410	1,410	김천시					
45	김천시 삼락동	225-4	구거	30	30	(국)농림 축산식품부					
46	김천시 삼락동	225-17	구거	630	53	(국)농림 축산식품부					
47	김천시 삼락동	225-24	도로	100	10	김천시					
48	김천시 삼락동	225-25	도로	104	6	김천시					

297mm×210mm [백상지 80g/㎡]



시 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26-786호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고시 제2026-97호(2026.3.26.)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안 동 시 장

1.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수변공원) 실시계획인가 사유

-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설, 이용객들의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유희시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사업
- 명 칭 :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시설 개선 사업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공원결정면적 : 29,231㎡
- 2) 금회시행면적 : 29,231㎡
-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29,231	100.0	5	828	828	
시설면적 합계		10,746	36.8	5	828	828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소계	5,716	19.6			
		도로	3,883	13.3			
		광장	1,833	6.3			
		휴양시설	1,815	6.2			
		유희시설	1,263	4.3			
		운동시설	-	-			
		조경시설	-	-			
		편익시설	1,428	4.9	2	304	304
		관리시설	524	1.8	3	524	524
녹지 및 기타		18,485	63.2				
공원 시설을 (법정60%이하)	변경	$10,746 / 29,231 \times 100 = 36.8\%$					
공원 건폐율 (법정60%이하)	변경	$828.0 / 29,231 \times 100 = 2.83\%$					

4) 세부 공사계획

- 가) 철 거 공 : 무근콘크리트 깨기 57m³, 콘크리트포장깨기 129m³, 아스팔트 포장깨기 5m³, 보도블록걸기 1,545m², 잔디블록걸기 1,052m², 경계석철거 478m, 난간철거 141m, 포장절단 30m
- 나) 토 공 : 흙깎기 791m³, 흙쌓기 1,475m³, 터파기 2,131m³, 퇴메우기 761m³, 사토 394m³
- 다) 관 로 공 : 집수정 13개소, 빗물받이 6개소, 오수받이 1개소, 배수관로 165m, 오수관로 3m,경관석 5개소, 수목표찰 233개, 하천 점용안내판 1개소, 흙관유공관 1개소, 가데나호스를 4개
- 라) 시설물공 : 경관옹벽 3개소, 콘크리트옹벽 2개소, 계단 2개소, 기계실 1개소
- 마) 포 장 공 : 고무칩포장 504m², 블록포장 550m², 흙콘크리트포장 1,610m², 소석포장 387m², 아스콘포장 629m², L형측구 109m, 과속방지턱 1개소, 경계석 877m, 경계엣지 132m, 거푸집 30.7m², 주차 도색 307m
- 바) 설 비 공 : 설비공사 1식(조합놀이대1개소, 단풍 3종, 워터드롭 1개소, 복합여과기 1개소, 2차급수설비 1식), 배수 및 기타설비공사 (상수인입, 내부배관 등)
- 사) 식 재 공 : 소나무이식 3주, 느티나무이식 6주, 배롱나무이식 10주, 산수유이식 2주, 은행나무이식 5주, 이팝나무이식 11주, 청단풍 이식 3주, 칠엽수이식 2주, 관목이식 400주, 잔디 1,342m²
- 아) 부 대 공 : 중기운반 1식, 공사설명판, 가설사무소, 품실관리비, 하차비 외 1식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6.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에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구분	
합 계				29,231	29,231			
1	남후면 단호리	71-1	전	619	619	안동시	공유지	
2	남후면 단호리	71-2	답	1,076	1,076	안동시	공유지	
3	남후면 단호리	71-3	답	198	198	안동시	공유지	
4	남후면 단호리	71-10	도	523	523	안동시	공유지	
5	남후면 단호리	71-12	답	882	882	안동시	공유지	
6	남후면 단호리	72	대	522	522	안동시	공유지	
7	남후면 단호리	73-1	임	298	298	안동시	공유지	
8	남후면 단호리	73-2	전	1,289	1,289	안동시	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구분	
9	남후면 단호리	73-3	답	691	691	안동시	공유지	
10	남후면 단호리	73-4	대	403	403	안동시	공유지	
11	남후면 단호리	74	전	390	390	안동시	공유지	
12	남후면 단호리	75	전	188	188	안동시	공유지	
13	남후면 단호리	76-1	전	681	681	안동시	공유지	
14	남후면 단호리	76-2	구	443	443	안동시	공유지	
15	남후면 단호리	76-3	대	452	452	안동시	공유지	
16	남후면 단호리	76-4	전	1,072	1,072	안동시	공유지	
17	남후면 단호리	77-1	답	2,182	2,182	안동시	공유지	
18	남후면 단호리	77-3	전	400	400	안동시	공유지	
19	남후면 단호리	77-4	구	161	161	안동시	공유지	
20	남후면 단호리	78-4	전	446	446	안동시	공유지	
21	남후면 단호리	78-5	구	17	17	안동시	공유지	
22	남후면 단호리	80	묘	5,910	5,910	안동시	공유지	
23	남후면 단호리	81	전	645	645	안동시	공유지	
24	남후면 단호리	82	묘	311	311	안동시	공유지	
25	남후면 단호리	83	전	625	625	안동시	공유지	
26	남후면 단호리	84-2	전	604	604	안동시	공유지	
27	남후면 단호리	86	전	1,831	1,831	안동시	공유지	
28	남후면 단호리	87-2	전	179	179	안동시	공유지	
29	남후면 단호리	1296-3	도	593	593	안동시	공유지	
30	남후면 단호리	산1-3	임	1,772	1,772	안동시	공유지	
31	남후면 단호리	산2-2	임	3,838	3,838	안동시	공유지	

8.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 안동시 공원녹지과(☎054-840-5365)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9.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공원녹지과(☎054-840-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공고 제2026-727호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자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자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의 사전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경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5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로

○ 명 칭 : 소로2-자21호선

※ 자인 일언리 마을안길 도로개설(소로2-자21호선)공사

3. 사업규모(변경없음)

- 시설결정면적 : L=320.0m, B=8.0m,
- 시설시행면적 : L=320.0m, B=8.0m,

4. 사업기간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산시 남매로 159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사업기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도로철도과****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6.04.02. ~ 2026.04.16.(도보계재일로부터 15일간)****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2) 및 도로철도과 (☎810-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m ²)			소유자		
	읍/면	동/리		지 번	공 부	당초편입	변경편입	주 소	성 명
계				16,751	2,755	2,755			
1	자인	일언	대	7	7	7	경산시 사동	정*신	
2	자인	일언	잡	78	78	78	경산시 사동	정*신	
3	자인	일언	과	13	13	13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언길	장*철	
4	자인	일언	도	6,509	20	20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5	자인	일언	전	195	195	195	경 산 시	경 산 시	
6	자인	일언	전	317	26	26	경 산 시	경 산 시	
7	자인	계림	도	695	43	43	경상북도	경상북도	
8	자인	계림	장	1	1	1	경 산 시	경 산 시	
9	자인	계림	과	444	394	394	경 산 시	경 산 시	
10	자인	계림	도	6,028	377	37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유자		성 명
	읍/면	동/리		지 번	공 부	당초면임	변경면임	주 소	
11	자인	계림	67-4	전	423	423	423	경 산 시	경 산 시
12	자인	계림	503	구	919	56	56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13	자인	계림	61-3	전	4	4	4	경 산 시	경 산 시
14	자인	계림	60-1	전	39	39	39	경 산 시	경 산 시
15	자인	계림	58-1	전	7	7	7	경 산 시	경 산 시
16	자인	계림	57-6	답	377	377	377	경 산 시	경 산 시
17	자인	계림	57-3	유	654	654	654	경 산 시	경 산 시
18	자인	계림	56-1	전	25	25	25	경 산 시	경 산 시
19	자인	계림	54-2	전	16	16	16	경 산 시	경 산 시

